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6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조은희 · 고동진 · 김재섭
박수민 · 서명옥 · 한지아
김소희 · 최보운 · 배현진
권영세 · 조정훈 · 최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의 선지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선매입 지원
3. 그 밖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기금 사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

입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의 반영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7항에 따른 납입실적 반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의 반영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7항에 따른 납입실적 반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